

환경부 공고 제2009-359호

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

2009년 12월 / 환경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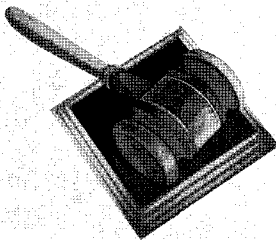
1. 개정이유

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취급제한·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·보존하게 되어 있으나 「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06-25호)에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.

2. 주요내용

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

- 상위 규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맞춰 서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.



환경부 공고 제2009-364호

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

2009년 12월 / 환경부장관

1. 제정이유

폐기물 관리능력이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지정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적은 관리 인력으로 효율적인 지정폐기물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 제정내용

자율점검 사업장 지정요건 :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

지정방법 : 지방청장이 업체 신청결과 심사 후 결정

자율점검방법 및 결과 보고 : 반기 1회 자율점검 후 보고

자율점검업체 확인 : 매년 10%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실시

환경부 고시 제2009-366호

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

2009년 12월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·시행('09.9.10~)됨에 따라,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폐자동차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기관 지정 및 폐차업체별 배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,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, 조기폐차 상태점검방법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기폐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 마련(안 제6조 신설)

- (1) 조기폐차 요건 확인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자체 업무 부담 가중 및 관련 규정 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
- (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8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'자동차환경협회'를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나.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'운행 가능 여부 확인' 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'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 기록부'를 전문기관(절차대행기관)에서 발급한 '중고자동차 성능점검결과표'로 대체(안 제7조 제4호 삭제 및 제8조 제3호 개정, 제9조 제3항 제3호 신설)

- (1)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의 정상적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고 있는 '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 기록부'가 자동차 정비소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발급문제 제기
- (2)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에서 자동차 검사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조기폐차 신청자동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여 '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'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

다. 저소득층*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 지원금액(장치가액의 90%~95%) 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가액의 90%를 지원토록 함(안 제10조 개정)

*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,600만원 이하인 근로자(현행 보조금규정 비교1)

라. 조기 폐차된 자동차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폐차업체별 재활용을 평가기준 및 폐차동차 배정 방법 등 규정(안 제11조 신설)

- (1)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제3항 개정·시행('09.9.10~)됨에 따라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에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기폐차 재활용을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폐차업체별 재활용을 등을 평가*

*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규정토록 함

- (2) 절차대행기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자동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마당 »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